

#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 변경안

(의안번호 제2721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17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20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3. 11. 28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이유

-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액이 당초 목표액을 높은 수준으로 초과 달성하여 목표액을 현 추이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함
-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개통 지연으로 인해, 기금계좌가 아닌 일반회계 세외수입계정으로 들어온 기부금을 기금계좌로 전입 필요

### 3. 주요내용

-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변경
  - 목표액: 150,000천 원 → 270,000천 원
- 고향사랑기부금 전입금 처리
  -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: 167,260,700원
  - ※ 2023년 8. 21일 기준 일반회계 수입액

### 4. 관련근거

-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
-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6조

## 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초과 모집되어 이를 반영하여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  
- 변경된 2023년도 기금 규모는 2억 7,135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2,000만 원이 증액되었음. 주요 수입 변경내용은 기부금수입 4,726만 원 감액과 기타 회계전입금 1억 6,726만 원 증액이며, 지출 변경내용은 예치금 1억 2,000만 원 증액임.
  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%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,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.

## 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## 7. 토 론 : 없음.

## 8. 심사결과 : 2023. 11. 28. 원안가결